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

한민석¹, 이보영^{*}

¹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the accident prevention

Min-Suk Han¹, Bo-Young Lee^{*}

¹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요약 최근들어 세월호 참사등의 대형사고는 인재로 밝혀지고 있고, 사고원인 역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와 관리사각지대, 안전불감증등으로 집약된다. 사고보다 더 큰 문제가 사업장의 안전불감증이다. 이 대목이 바로 안전사고를 낸 사업장과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배상에 추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기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를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제도는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는 한편, 안전을 위한 투자 및 관리에 힘쓰는 건전한 기업에는 더욱 많은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외시하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것이 사회정의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Abstract Large accidents such as the recent to the ringing years Pat disaster they become apparent in the human resources, the cause of the accident is also the site corresponding manual member and management blind spots, are aggregated such as safety frugidity. Big problem is safe frugidity of workplace than accident. It is also a reason to introduce a punitive damages system in offices and business owners that caused the direct safety accident from this point. Punitive damages agent and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y so as to compensate for far more money than the actual damages, which carry a punishment nature to prevent a situation where the tort is repeated. Currently, it admits "compensatory damages system" corresponding to the damage that gave basically damage by law, but are subject to criticism that not properly relief victims. However, there is a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This is, this system, whil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reverse safety accident, strive to investment and management for safety, healthy companies can operate in the direction of giving more opportunities, national companies that are ignoring and threatening the safety, but to leave because the match also to social justice.

Keywords : Accident prevention,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The Anti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Safety frugidity

1. 서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화두와 같은 이야기는 ‘안전과 보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보안뉴스, 2015)[1]. 현대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한 사회로 진입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의 변화로 각종 재난이나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되었으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2014년 4월 세월호

^{*}Corresponding Author : Bo-Young Lee(Hoseo Univ.)

Tel: +82-10-5305-3229 email: bylee@hoseo.edu

Received June 19, 2015

Revised (1st July 24, 2015, 2nd August 21, 2015)

Accepted September 11, 2015

Published September 30, 2015

참사를 통해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규제 문제점 및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고, 관련법과 제도의 흠결이 심각할 정도로 드러났다(이천현, 2015)[2]. 더욱이 세월호 참사의 경우 무리한 증축 및 화물과다 적재, 선원들의 승객에 대한 구호 노력 미흡 등 회사의 관리 부실과 여러 가지 중첩된 불법행위가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정원석, 2014)[3]. 이른바 실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경영진 및 소유주의 관리책임 강화 및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동안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3)의 후기 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4]이고, 또 하나는 한국행정연구원(2009)의 위기관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5]가 대표적이나, 그동안의 연구는 위험관리에 집중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직접 재난을 다루고, 재난관리, 안전 인명사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룬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자연재난 재해, 사회재난과 같은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 및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바 있는 각종 재해 재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업주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6] 현재의 손해배상제도는 전보배상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가 일으킨 직·간접적인 손해를 원상복구 시켜주는 수준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불법행위 예방효과는 미미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어도 인명관련 부분부터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방향 속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허용가능성을 진단하고 허용시 문제점과 그 대안(보완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적 관점에서 인명안전사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사고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안전망 구축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하 이러한 것을 토대로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

도개관 3. 징벌적 손해배상의 허용가능성 4.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 문제점 및 보완점 5. 결론의 순으로 논의를 펼치기로 한다.

2.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관

2.1 안전과 자유의 선택과 집중

2.1.1 안전과 자유의 선택의 기로

21세기에 와서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조사(통계청, 201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불안감이 높은 순위로 국가안보, 식량안보, 정보보안, 안전사고를 포함한 범죄위험, 교통사고 중 안전사고를 포함한 범죄위험이 64.2%로 가장 높았다[7]. 그리고 한국사회의 불안요인에 관한 질문 중 29.3%가 안전사고를 포함한 범죄위험, 국가안보(18.4%), 경제위험(15.3%), 도덕성부족(10.6%)의 순으로 나타나 안전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과 위험과의 상관관계이다. 안전이란 미래의 삶에 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야기되는 시민의 불안감 제거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 한다고 한다(김재윤, 2009)[8]. 이같은 사고위에 단순한 세기의 전환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21세기에 들어서서 우리 사회 담론의 무게가 안전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듯하다. 9.11사태, 최근 2014년 세월호사건 등으로 이제 안전사회는 모든 인류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글로벌 테마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한 논의 또한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Zinn(2008)에 의하면 안전사회의 담론의 모습은 자주 인권 담론과 충돌하게 되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한다[9]. 최근에 안전을 바라보는 발상도 그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무선(2014)에 의하면 이같은 토대 위에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와 자유의 선택기로서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한다[10].

2.1.2 안전과 인간의 중요성

인권의 역사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이다. 인권이란 개인으로서의 권리를 말하며, 이는 각자가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이부하,

2011)[11].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인권이 계층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되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선언한 조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안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피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 여기에 자유·인권과 안전의 선택의 문제만 남는 것이다(이재일, 2012)[12].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2.2.1 안전관련 정책기조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여기에는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 뿐 아니라 화재, 폭발,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교통, 통신 등 국가기반체제의 미비와 감염병 및 가축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특히 현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하여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도록 정부조직개편을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이법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조직(재난관리총괄, 조정기능강화, 민·관협력강화, 안전문화진흥 등)이다.

2.2.2 인명 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사고의 전환

김차동(2015)은 지나치게 형사적 처벌이 만연하고 행정권력이 비대한 대한민국에서 형사상 제재 및 행정벌에 의한 제재 효과는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재비용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13]. 하태훈(2015)은 이러한 현실진단과 그 대안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집행의 전체적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14].

여기서 인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등장을 예고할 수 있다(정원석, 2014)[15]. 특히 오영중(2015)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고찰에서 도입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위법행위로 얻은 기대이익과 적발 시 입게 될 기대손실을 비교하고 있다[16].

3.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허용가능성

3.1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 및 특성

윤정환(1992)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처음 나온 이후[17], 김차동(2015)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일정한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 이상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손해배상을 말한다[18].

판례에 나타난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에 관하여 상급심판결은 보이지 않으나 하급심판례에서 가해자에게 특히 고의 등의 주관적인 악의가 있는 경우에 보상적 손해배상에 덧붙여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동종행위의 억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손해배상으로서 보통법(common law)상 인정되고 있는 구제방법의 일종이라고 개념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 손해의 전보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민사법체계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형벌적 성질을 갖는 배상형태이다 라고 하고 있다[19]. 최근에 와서는 징벌은 제재 이외도 항상 억지효과 수반되고 20세기 법경제학의 발전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이런 억지적 기능이 강조되기 시작하며, Note(1974)에 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징벌과 억지를 위한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 있다.

이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계약관계에서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20]과 고

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21]으로 나눌 수 있다(김사길, 변승남, 2012)[22].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직·간접적 손해를 복구시켜주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손해를 복구하는 수준의 배상을 원칙적으로 하는 전보배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보배상의 불법행위 및 관리소홀 예방효과는 미미하다(김현수, 2012)[23].

세월호 참사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자의 기대여명 동안의 평생소득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모두 보상해 준다고 해도 이는 유족과 사망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은 것 일뿐 가해자가 관리소홀 및 불법행위로 인한 징벌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정원석, 2014)[24].

이렇게 볼 때 전보적 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분하여 설명해 본다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Compensational damages and Punitive Damages

Division	Compensational Damages	Punitive Damages
Apply Countries	Legal Continent Countries	Anglo-American Legal State
Scope of Remedies	Limited to Damages	Damages over
Tort Punishment	Criminal legal punishment	Criminal legal & Monetary Punishment
Target Punishment	Practitioners	Practitioners, Executive, Owner
Prevention	No protective effect	In prevention
Compensation Paid	Relatively low	Relatively large

* What is mental damages in the scope of he remedy should cover all damage; including damage caused by unlawful actions.

3.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첫째, 규정위반행위의 억지와 위반행위자의 처벌에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 명칭에서 보듯이 규정위반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단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전부 회수함으로써 행위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인을 제거하여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규정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환수를 위해서이

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선 그 부당이득을 피해액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게 하기 때문에 위반행위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이다. 손해배상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compensation)에 주된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이라고도 한다. 한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보적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범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얻지 못하며 때로는 범위반행위의 대가를 치르게 되어 범위반행위를 할 유인이 감소하거나 소멸되어 결국 범위반행위를 억지할 수 있게 되는 부수적 효과를 얻게 된다.

넷째, 사적인 구제에 대한 유인의 제공을 위해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회복 가능한 피해액을 증가시킴으로써 소액·다수의 피해형태에서 소송이 적극적으로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 하였지만 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논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 허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해보기로 한다.

3.3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허용가능성

3.3.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찬반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하여 도입 찬반론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하는 주요이유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의 증가와 형사처벌이 수반될 경우 이중처벌의 소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노린 무분별한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김현수, 2012)[25]이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존재하므로 금전적 부과는 하나의 범법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입을 주장하는 주요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징벌적 제재로 인한 불법행위 예방효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원상복구 이상의 충분한 배상을 해주어야하며, 영국과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인정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든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국가에서도 불법행위 억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벌대상도 실무자로 국한 되는 경우가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

제할 경우, 기업의 최고경영자 혹은 소유자는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 기대되는 추가적인 이익이 사고 발생 시 예상되는 복구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소유주는 실무진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유인이 있으며, 이에 반해 불법행위 혹은 관리 소홀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피해자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한다(이의섭, 2014)[26].

3.3.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민사사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초로 인정할 법전은 BC 2000년 함무라비 법전이며(K.Redden, 1981)[27], 그 후 BC 1400년의 히타아트 법전(the Hittite law)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고 BC 2000년의 마누법전(the Hindu code of Manu)에도 규정되어 있다.

영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계약 분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은밀성을 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가 대부분 원고이외의 사회구성원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의 ‘코먼로’에서 인정되고 미국의 연방성문법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한 법리이다. 대륙법 체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일반적인 불법행위나 공정거래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륙법은 민사법과 형사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법에서 나타나는 손해배상에 형사책임적 성격인 징벌은 대륙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28].

오늘날, 이 제도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4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서 인정하고 있다(소재선, 1998)[29].

미국은 주로 초창기에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1978년 Mrs. Gillespie와 그녀의 가족들은 Ford사의 Pinto 자동차를 타고 Minneapolis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카브레이터의 이상으로 엔진이 정지되었으며, 후방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였다. 연료탱크로부터 연료가 새어나와 승용차 실내로 유입되었고 전기배선의 스파크로 인해 차량이

폭발하였다. 부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화상으로 사망하였다. 동승했던 13세의 Robble Carlton은 전신에 80도 화상을 입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부인의 남편 Gillespie는 Ford Motors Corp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판결결과 Ford사는 피해자에게 2,500,000달러의 배상금과 리콜을 고의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3,50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다.(Gillespie Vs Ford Motor Corp, 1978), 김사갈·변승남, 2002)[30].

그러나 최근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다함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바 있다(BMW of North America. Inc. Vs Ira Gore. Jr. s. ct, 1996)[31]. 이처럼 미국은 제조물책임의 위기에 대한 인식속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함께 2~3배 배상제도가 자국 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여 해당제도의 제한적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정환, 2011)[32].

3.3.3 위헌성 논의

앞서 이 제도에 관하여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론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곧 위헌론에 대한 검토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에 관하여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에 관하여 실 사례로 문제된바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처음 인정된 1784년부터 1967년경 연방 제2 항소법원 Roginsy V. Richardson - Merrell inc. 사건에 관한 판결[33] 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헌성 시비가 있었다가 위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의가 시작되었다(이점인, 2005)[34].

미연방 수정 헌법 제5조 상의 이중위험금지 원칙의 위반, 동 제8조 소정의 과도한 벌금의 금지 원칙에 위반, 동 제14조의 적법절차 보장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한 위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같은 미국의 위헌성 논의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만한 위헌성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시 전제조건에 활용코자 한다.

첫째, 이중처벌금지 위반여부이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범위만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받

생시키는 불법행위가 되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이란 제재와 형사처벌이란 제재가 그 중점으로 부과되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Wheeler, 1983)[35]. 그동안 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입법에 관한 연혁적인 분석결과와 문헌적 해석결과에 비추어 위 원칙상의 처벌개념은 처벌에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형사처벌 및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제재의 총합에 대한 헌법상의 통제는 과잉처벌금지원칙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김차동, 2015)[36].

둘째, 과잉처벌금지원칙위반 여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능적인 면에서 제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제재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하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ngraham v. Whight 사건[37]에서 미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8조 소정의 형벌개념에 형사적 제재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민사적 제재에는 적용이 없다고 하였다. 이어 Browning - Ferris v. Wilco 사건[38]에서 과도한 벌금금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8조는 형사처벌의 경우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위 판단을 재확인하였다.

셋째, 적법절차준수 위반여부이다. 민사·형사 소송절차를 준별하여 형사소송절차는 행위자의 불법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넘는 입증을 요구하였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국가공권력 행사의 절차적 측면을 통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적법절차원칙을 우회하여 행위자를 징벌하게 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채희만, 2015)[39].

생각건대,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이 문제된다면 과잉처벌금지위반(비례성의 원칙)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2011. 7. 7자 ‘대기업의 기술탈취 심사지침제정’ 제하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의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대기업 협력사 22.1%가 거래과정에서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보유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요구를 지적하였고, 대다수 중소기업은 보유 기술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받을 경우 거래희망 대기업에게 기술 자료를 약 80%정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설문조사 되었다는 사실에 기하여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도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며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이므로 사기·기만의 정도가 심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40].

3.3.4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론적 정당성 여부

미국의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독점금지법의 3배 배상 제도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액 보다 많게 책정되어야 하는 이론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

독점금지법의 3배 배상 제도의 경우, 카르텔의 가격담합과 같은 행위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특성(covert nature)이 있고, 원고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완전히 몰수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많은 배상액을 가해자(피고)에게 배상토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아무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 제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정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코먼로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요건으로 은밀성(covert nature) 또는 원고 이외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인 비난의 정도(Degree of reprehensibility)를 판단할 경우, 사회전체에 미친 손해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는 원고가 계약 불이행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 이외에 피고의 유사한 행위가 일반대중에게도 행해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 가중된(agggravated) 행위 또는 포악한 행위이어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에서 발견되는 포악성과 유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41].

3.3.5 소결

지나치게 형사적 처벌이 만연하고 행정권력이 비대한 우리나라에서 형사상 제재 및 행정벌에 의한 제재효과는 이미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재비용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로 비교우위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집행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되 시행 시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의 검토만을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관리 부실이 부른 완벽한 인재(人災)이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한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안전관리부실로 인한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것은 안전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생명 혹은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그리고 앞서 위헌론 검토에서 지적한 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배상액 결정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재판은 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배심원제도와 유사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필요하며, 위헌론 검토와 허용가능성, 입법론 검토 등을 통해 보았을 때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명안전사고에 한하여 우선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

4.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시 문제점 및 보완점

4.1 도입 시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허용하자는 소결론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이에 대하여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좀 더 제도의 목적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민·형사적 책임을 구별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매우 생소한 제도로써 도입에 따른 많은 저항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손해배상의 목적은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며 실 손해배상주의, 제한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징벌

적 성격을 갖는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거부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보완방법을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나채준, 2013)[42].

첫째, 법체계적 정합성의 손상 문제이다. 대륙법계 국가들 대부분은 민·형사책임을 분리하고 있다. 징계는 형법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종합적인 법계의 정비 없이 그대로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김영현, 2015)[43]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혼동하는 것이며 민사소송으로서 손해배상제도의 목적은 발생한 손해의 보상이므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있다(Morris, 1912)[4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민사소송에 관하여 배심제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요건이나 구체적인 배상액을 정하는 업무를 모두 법관에게 일임시키는 경우 법관에 따라 배상액수의 차이도 크게 발생하고 재판의 공정성도 시비도 우려되는 등 과장이 예상된다.

둘째, 손해의 공평분담 문제이다. 대법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그 지도이념으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들고 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은 기본적으로 보장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실손해 배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실손해를 넘어서 과잉구제(우연한 횡재, windfalls) 또는 부당이득을 부여하는 제도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실손해액 이외에 소송과정에서 크지 않은 소송관례비용이 들어 이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형태로 보전해 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소송관련 비용을 실손해의 개념에 포함시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그 논거이다(오영중, 2015)[45].

셋째, 피해자의 부당이득 내지 남소(濫訴)가능성 문제이다. 거액의 수입료를 예상한 변호사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소송을 부추겨 소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 사회적배상(Social Damages) 기능에 근거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Sharkey, 2003)[46]. 징벌적 손해배상의 정당화 근거가 다른 유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적발가능성이 1이 아닌 상태에서 적절한 억지력을 달성하고자 인정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배상제도는 과징금 사용처를 일부 개선하여 피해자 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4.2 보완점

이와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시 문제되는 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생각할 수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는 보상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보상적 기능이지만, 가해자에게 그 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가해자가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 예방적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경고하는 일반 예방적 의미도 갖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Sedgwick, 1912)[47]. 또한 이미 지적 한대로 피해자의 부담이득 내지 남소가능성이 있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귀속주체는 꼭 소송을 제기한 원고 뿐 아니라 보다 폭 넓은 피해자군이 될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의 일부를 정부에 귀속시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Dautghety & Jennifer, 2003)[48]. 김차동(2015)에 의하면 미국은 1980년대부터 분할 보상법이란 형태로 입법화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49].

한편 제도적인 개선보완책으로는 철도무임승차 시 30배를 초과하여 위반 시 기대손실비용을 매우 크게하는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오히려 제도 목적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영중(2015)에 의하면 하도급법에 규정되어있는 징벌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10배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50].

피해기업의 기대이익을 높여주고 기대손실을 낮추는 방향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5. 결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더 이상 외국의 제도가 아닌 하도급법에도 규정되어있고 세월호 사건이후 다중피해 인명살상 문제에 대한 업주의 책임문제가 부각되는 시점

에서 더욱 더 큰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상황에 따라 많은 법률안이 제출되어있는 만큼 심도있는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 2014. 5. 22 여야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대형안전사고에 대해 피해금액의 최고 10배까지 배상금을 물리는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 항공, 철도 등 교통안전 관련 사고에 대해 해당기업을 피해금액의 3배내지 10배까지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되어있다.[51]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징벌이란 용어가 말해주듯이 복수를 내용으로 한 처벌목적에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며 민사손해배상과 형사처벌로 준별되는 법체계 속에서는 그 도입이 망설여진다.

그러나 retributory 나 vindictive 보다는 punitive 나 exemplary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복수라는 목적을 희석시키고자 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발상지 영국의 운영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궁극적으로 억지력의 확보에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다른 법집행제도들의 제재효과와 제반비용을 잘 살펴 총제제가 최적 억지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입 할 필요가 있다(김두진, 2007; 이의섭, 2014)[52]. 이렇게 한다면 각 제재 수단의 조합과 선택에 의하여 제재효과를 크게 높이고 제재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법집행 체계를 효율화 할 수 있다.

지나치게 형사적 처벌이 만연하고 행정권력이 비대한 대한민국에서 형사상 제재 및 행정벌에 의한 제재효과는 이미 효율성이 반감되고, 제재비용 또한 만만치 않으므로 비교우위에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집행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정환, 2015)[53].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듯이 관리부실이 부른 인재이고,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분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든지 개별법 분야에서 행위유형별로 도입하거나 그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3배 배상제도로 도입하지는 최근의 경향은 가닥을 잘 잡고 있다할 것이다. 신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할 뿐이다.

다만, 세월호와 같은 참혹한 대형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성과 없이 일회성 논란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사회의 여건을 고려한 검토와 일반대중에게 넓은 공감대 형성이 우선된 토착화 노력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Security News, "2015 Keywords government policies promoting safety and security" 2015. 1. 7..
- [2] C. H. Lee, "Criminal policy countermeasures for multiple casualties accident prevention", KIC, 2015.
- [3] W. S. Jung, "Need fo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evention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evention", KIRI Weekly Focus. 2014. 5. 12.
- [4] C. H. Lee,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Research for Risk" Management of late modern society management, 2009.
- [5] KIPA, collaborative governance structure of crisis management, 2009.
- [6] Y. J. Chang, "In troducing Punitive Damages to Massive Man-made Disasters", Ewha Law Review Vol 4, No, 2, PP, 1-2, 2014.
- [7] Statistics, 2012 Social Survey report, P.17 2012. 12.
- [8] J. Y. Kim, "Study o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s of security through criminal law", Risks and challenges of the modern criminal law,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9.
- [9] Zinn, Risk Society and reflective Modernization, in ; J.O.Zinn(ed:), Social Theories and Un=certainty, 2008. P.21. 2008.
- [10] M. S. Lee, Alternative des strafrecht fair die sincere Gesellschaft in der Menschenrechtlichen Dimension gesehen, Legal Research, Vol. 55. no, 3. 2014, PP.28-29. 2014.
- [11] B. H. Lee, "Die Sicherheitsgewährleistung der Bürger im Verfassungsstsst" 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Sozialwissenschaften Vol 2. No 1, P. 171. 2011
- [12] J. I. Yi. "Funktion und Grenzen der 'Mehr Sicherheit' mittle des Strafrechts" HUFs Law Review. Vol 35. No 1. P. 217. 2011.
- [13] C. D. Ki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s, PP. 14-43, 2014.
- [14] T. H. Ha,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stem Piscussion paper,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s, PP. 90-94, 2015.
- [15] W. S. Jung, "Need fo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evention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evention", KIRI Weekly Focus. 2014. 5. 12.
- [16] Y. J. Oh, Law-economics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s, PP. 44-62, 2015.
- [17] J. H. Yun, "The study on the punitive damages", property Law Research, Vol 9, No, 1. P. 134, 1992.
- [18] C. D. Ki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s, PP. 14-43, 2014.
- [19]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astern. 1995. 2. 10. Sentence 93 Gahapuibu 19069.
- [20] Civil Code Article 390.
- [21] Civil Code Article 750.
- [22] S. K. Kim, Seong Nam Byun, A Study on the Law of Punitive PamageS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PP 1-6, 2002.
- [23] H. S. Kim, "Legislative assessment of punitive damages",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 [24] W. S. Jung, "Need for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evention damages for personal injury prevention", KIRI Weekly Focus. 2014. 5. 12.
- [25] H. S. Kim, "Legislative assessment of punitive damag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12.
- [26] W. S. Lee, The investigation of the problems with Punitive Damage in Subcontracting Law in Korea, CERIK, Report, 2014.
- [27] K..Redden. Punitive Damages 24, 1980.
- [28] E. S. Lee, "Subcontracting Law no justification Punitive damages", CERIK (Contibutions media), 2013. 3.
- [29] J. S. So, "Features and limits of punitive damages" Kyung Hee University Proceeding 27, 1998.
- [30] S. K. Kim. S.N.Byun, "A Study on the law of Punitive Damages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Conference on Industrial Engineering, 2002.
- [31] BMW of North American, Inc, v, Ira Gore, Tr. Sict. 1996.
- [32] H. Jung. "A Critical Review of the Subcontracting law three times the Compensation Scheme", Corporate Policy Series, FKI, 2011.
- [33] 378F. 3ct. 832(27d cir, 1967)
- [34] J. I. Le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Dang-A University, knowledge Resoures Development Center, 2005.
- [35] Wheeler, M, E, The constitutional case for Reforming Punitive Damages Procedures 69 Virginia. L. Rev. 269.

- 1983.
- [36] C. D. Ki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 PP. 14-43, 2014.
- [37] 430 u. s. 851. 1977.
- [38] 430 u. s. 297, 1989.
- [39] H. M. Chai,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debating, 2 Seoul Bar Association, PP. 72-74. 2015.
- [40] H. S. Kim, "Legal Issues Relating to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Ewha Law Journal, Vol. 18. No. 1. PP. 155-184, 2013.
- [41] D. S. E, "Side effects of Punitive Damages Prevention Research institutions", Jusitice Report, 2013.
- [42] C. J. Ra, Safety Vulnerable and Safety Improvement of blind Spot related to the legal system, Consumer magazine, 2014.6. P.22
- [43] Y. H. Ki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debating, 2 Seoul Bar Association, PP. 68-74. 2015.
- [44] Morris, "Punitive Damages in Tort Case," 44 Harv. L. Rev. 1176(1912).
- [45] Y. J. Oh, Law-economics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s, PP. 44-62, 2015.
- [46] Sharkey. Catherine M., "Punitive Damages as Societal Damages." 113 Yale Law Journal 347 (2003). DOI: <http://dx.doi.org/10.2307/3657525>
- [47] Sedgwick, Measures of Damages, 911 ed. (1912).
- [48] Dautghety. Andrew F. and JenniterF. Reingaum. "Found Money Split-Award Stalues and Seliemen of Punitive Damages Cases." 5 American Law and Economics 134(2003).
- [49] C. D. Kim,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 PP. 14-43, 2014.
- [50] Y. J. Oh, Law-economics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Symposium on punitive damages introduction, law times, PP. 44-62, 2015.
- [51] MBC NEWS, 2014. 5. 22.
- [52] D. J. Kim,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law, punitive amages related to introduction study, KLRI, 2007 ; U. S. Lee, Suncontracting Law Review Issues of punitive damages in the common law system cas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Industry, 2014.
- [53] H. Jung, "A Critical Review of the Subcontracting three time the Compensation Scheme", Corporate Policy Series, FKI, 2011.

한 민 석(Min-Suk Han)

[정회원]



- 2012년 2월 :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경영지도학과(경영학석사)
- 2013년 7월 : 인하대 지속가능경영 박사 3학기 수료
- 2014년 7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벤처경영학과 박사 과정 수료
- 2013년 5월 ~ 현재 : 한국경제인 증원 이사

<관심분야>

벤처경영, 창업법률, 표준화, ISO

이 보 영(Bo-Young Lee)

[정회원]



- 1987년 8월 : 단국대학교 법학박사 (L.L.D)
- 2002년 8월 ~ 2005년 2월 : 호서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2005년 3월 ~ 2007년 2월 : 호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1987년 3월 ~ 2013년 2월 : 호서대학교 법학과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 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중소기업법, 창업법규, 벤처기업법